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89
----------	------

2014년 4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4월 8일, 김광수 의원(찬성자 9명)
- 나. 회부일자 : 2014년 4월 10일
-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4월 16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광수 의원)

가. 제안 이유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1)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 2)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혁신파크 내에 혁신 기관, 단체,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9조).
- 3)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4)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집행부와 협의하였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번지 일대에 다양한 사회 혁신 주체들이 모여서 협업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발의된 제정안임.
-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관리 및 위임의 위탁과 사용료 징수 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 서울혁신파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민간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개별법령에 근거해야 할 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총칙(제1장)	
규 정	주 요 내 용
제2조 (서울혁신파크 정의)	·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 등에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일체의 시설
제3조 (서울혁신파크 기능)	·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 도출 ·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 혁신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집약적인 육성체계 구축 · 사회혁신 성과에 대한 모델 확산 · 사회혁신에 대한 전시·체험 공간 및 기회 제공 등
제4조 (서울혁신파크 설치)	·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혁신 기관·단체·기업 입주 공간, 혁신도서관 및 혁신연구센터 - 중간지원조직,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어르신복합문화시설 - 도시농업체험장, 숲체험장, 아케이드, 호텔 등

② 공유재산 사용료 등(제2장)

조 항	주 요 내 용
제7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 사회혁신 관련 행사 개최시 사용료 면제 · 혁신 관련 입주기관에 대한 사용료 감면(100분의 80 범위내)
제9조 ~ 제10조 (유치 및 입주 지원)	· 혁신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입주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③ 관리·운영 위탁 근거 등 (제3장 관리·운영 위탁, 제4장 운영협의회)

조 항	주 요 내 용
제12조 (관리·운영 위탁)	·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제14조 ~ 제17조 (운영협의회)	·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서울혁신파크 부지관리 실태를 보면, 동 부지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관리기간이 2014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직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집행부는 서울혁신파크 조성 추진 일정 및 관련 조례안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음.
-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대한 공공행정 용도로서의 활용 수요가 높음에 따라 집행부는 동 부지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2014년 4월 1일)하였음.
-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를 잠정 운영하고 있는 바, 집행부 공무원(서울혁신기획관 등 4명)과 중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년일자리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민간전문가(6명)가 참여하고 있음.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활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① 서울혁신파크 활용현황

구 분	활용면적	이용 부서, 기관, 단체	비 고
계	28,776㎡		
공공목적 활용	12,239㎡	일자리정책과 등 12개 부서, 기관	무상사용
민 간 입 대	16,537㎡	(주)드림네트웍스 등 18개 단체	유상대부

② 중간지원조직 입주현황

기 관 명	입주시기	사용면적	주 관 부 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2. 9월	1,282㎡	마을공동체담당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12.11월	1,679㎡	어르신복지과
청년일자리허브	'13. 3월	1,882㎡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3. 3월	1,487㎡	사회적경제과
크리에이티브랩	'13. 4월	745㎡	경제정책과

※ '16년까지 직장맘지원센터 등 6개 중간지원조직 추가 입주 예정임

가. 서울혁신파크 기능 및 설치

제정안 제3조 및 제4조

제3조(기능) 서울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 도출
2.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3. 혁신인재 양성 및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혁신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집약적 육성체계 구축
5. 사회혁신 성과에 대한 모델의 국내·외 확산
6. 사회혁신에 대한 전시, 체험 공간 및 기회 제공 등

제4조(설치) 서울혁신파크 내에는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혁신 기관, 단체, 기업을 위한 입주 및 교류 공간
2. 혁신도서관, 혁신연구센터
3. 서울특별시 중간지원조직 입주 공간
4.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어르신복합문화시설
5. 도시농업 체험장, 숲 체험장 및 혁신 체험시설
6. 아케이드, 호텔 등 편의 및 부대시설
7.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서울혁신파크의 조성 계획을 보면, 서울혁신파크 기능 수행을 위한 공간과 시설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복합문화시설 및 도시농업체험장 등의 시설과 호텔 등의 부대시설이 서울혁신파크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인 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용도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등 부대시설 운영을 위해 동 부지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는 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지의 일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나.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정안 제7조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생략)

②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 조항을 통하여 사용료의 요율을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및 제26조(대부료의 요율)에 따른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사용료율을 적용해야 하나, 제정안을 적용할 경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율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는 사용료율(대부료율 포함)을 정책 목표 및 사용목적의 공익성과 사회적 과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율을 구체적으로 요율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금번 제정조례안은 그러한 제한 없이 규칙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음.
-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규칙으로 위임함에 있어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결 론

- 민간위탁은 개별법령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 의의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조문상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는 법적 측면에서 불확정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 행정집행과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혁신’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자의적 행정집행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서울혁신파크내에 서로 성격이 다른 시설물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 사회혁신이라는 목적으로 그 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능 조정 및 배치 등에 있어서 통합적 관리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관련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면하도록 한 제정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89
----------	------------

제안년월일 : 2014년 4월16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관련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

나. 안 제7조제2항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집행부와 협의하였음.

다. 기 타 : 수정안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혁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혁신파크”라 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 등에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인”이라 함은 서울혁신파크를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p>제3조(기능) 서울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 도출 2.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3. 혁신인재 양성 및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혁신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집약적 육성체계 구축 5. 사회혁신 성과에 대한 모델의 국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기능) (제정안과 같음)</p>

내·외 확산

6. 사회혁신에 대한 전시, 체험 공간 및 기회 제공 등

제4조(설치) 서울혁신파크 내에는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혁신 기관, 단체, 기업을 위한 입주 및 교류 공간
2. 혁신도서관, 혁신연구센터
3. 서울특별시 중간지원조직 입주 공간
4.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어르신복합문화시설
5. 도시농업 체험장, 숲 체험장 및 혁신 체험시설
6. 아케이드, 호텔 등 편의 및 부대시설
7.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적용범위) 서울혁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유재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①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제4조(설치) (제정안과 같음)

제5조(적용범위) (제정안과 같음)

제2장 공유재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제정안과 같음)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

3. 기타 서울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비) ① 서울혁신파크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 내역을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9조(혁신기관 등 유치)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기관, 단체,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

-----.

1. -----

2. -----

3. <삭제함>

② -----

-----50

제8조(관리비) (제정안과 같음)

제9조(혁신기관 등 유치)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혁신 기관, 단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주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단체, 기업은 서울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입주기관 등의 의무) ① 입주기관은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은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

제10조(입주기관 등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입주기관 등의 의무) (제정안과 같음)

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기관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서울혁신파크 내 혁신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타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위해

제3장 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정안과 같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의 서울혁신파크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운영협의회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서울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
2.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혁신파크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혁신파크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관리·운영지원) (제정안과 같음)

제4장 운영협의회

제14조(설치) (제정안과 같음)

제15조(구성)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서울혁신파크 입주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사회혁신, 경영, 문화, 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분야 등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혁신, 일자리,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6조(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

제16조(제척·회피 등) (제정안과 같음)

제17조(운영) (제정안과 같음)

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제정안과 같음)

제2조(협의회 존속기한) (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혁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혁신파크”라 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 등에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인”이라 함은 서울혁신파크를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 도출
2.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3. 혁신인재 양성 및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혁신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집약적 육성체계 구축
5. 사회혁신 성과에 대한 모델의 국내·외 확산
6. 사회혁신에 대한 전시, 체험 공간 및 기회 제공 등

제4조(설치) 서울혁신파크 내에는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혁신 기관, 단체, 기업을 위한 입주 및 교류 공간
2. 혁신도서관, 혁신연구센터
3. 서울특별시 중간지원조직 입주 공간
4.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어르신복합문화시설
5. 도시농업 체험장, 숲 체험장 및 혁신 체험시설

6. 아케이드, 호텔 등 편의 및 부대시설

7. 기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적용범위) 서울혁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유재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①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

②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비) ① 서울혁신파크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하되 관리비 내역을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9조(혁신기관 등 유치)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 기관, 단체,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혁신 기관, 단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주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혁

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단체, 기업은 서울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입주기관 등의 의무) ① 입주기관은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은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기관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서울혁신파크 내 혁신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타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의 서울혁신파크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운영협의회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서울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주요사항
2.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혁신파크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혁신파크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서울혁신파크 입주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사회혁신, 경영, 문화, 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혁신, 일자리,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6조(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

다.

제17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는 존속기한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